공 개

의안번호	제 369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7. 31. (제 14 차)

의결사항

한국에스지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7. 31.

1. 의결주문

한국에스지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한국에스지증권㈜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이하 '금융실명법')」에서 정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에서 정한 정보교류의 차단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1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「금융실명법」 위반 관련 한국에스지증권㈜ OOOO ◈◈◈에 대한 '주의' 조치를 면제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(붙임 1)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(붙임 2)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○ 2026년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6.5.28.) 심의필
- ○ 2026년도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7.23.) 심의필

<별지>

한국에스지증권㈜ OOOO ◈◈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임직원에 대한 조치

○ OOOO ◈◈◈ : 「금융실명법」 위반 관련 '주의' 조치 면제

- 조치 사유 : 가. 계열회사간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
- 법적 근거 : 舊「자본시장법」 제45조 제2항, 舊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1조 제3항, 「자본시장법」 제45조 제2항, 제422조 제1항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0조 제1항, 舊「금융실명법」 제4조 제1항, 舊「금융실명법」 제5조의2 제3항,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18조 제1항, 제23조 제1항, 제46조 제2항 <별표3>

2. 조치사유

가. 계열회사간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45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,

「금융실명법」 제4조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한국에스지증권㈜는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그룹내 고객의 거래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동사와 거래한 고객(최대 xx개)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 직원 xx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

(붙임 1)

관계 법규

□ 舊「자본시장법」(2020.5.19.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5조(정보교류의 차단)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1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
□ 舊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(2021.5.18.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1조(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) ③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"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

2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

□ 「자본시장법」

제45조(정보교류의 차단)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함

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5. 기관경고
6. 기관주의

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

제50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)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"교류차단대상정보"라 한다)를 말함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함

2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□ 舊「금융실명법」(2025.4.1.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(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)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이하 "거래정보등"이라 한다)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 (이하 생략)

제5조의2(행정처분)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
 다. 문책경고
 라. 주의적 경고
 마. 주의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18조(임원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음

3. 문책 경고

가.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
4. 주의적 경고

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·부당행위의 동기, 목적, 방법, 수단,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·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

5. 주의

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·부당행위의 동기, 목적, 방법, 수단,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·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

제23조(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)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・부당행위의 정도, 고의・중과실 여부, 사후 수습 노력, 공적,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

제46조(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) ① 위법·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.

1.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, 근무성적, 개전의 정 및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
2. 위법·부당행위의 동기, 정도,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·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
3. 제재대상자의 고의, 중과실, 경과실 여부
4.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·변상 여부
5. 자진신고,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
6. 경영방침, 경영시스템의 오류, 금융·경제여건 등 내·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

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·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. 다만,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

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.

<별표3> 금융업종별·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

Ⅰ. 공통부문

Ⅰ-1. 금융실명법 위반행위

1. 관련자의 구분

금융실명법(이하 '법'이라 한다)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·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① 행위자 : 위반행위를 한 자,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

② 감독자 :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

③ 보조자 :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

2.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

① (생략)

② 법 제4조 위반행위(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)

책임정도	행위자	보조자	감독자
고의	감봉3월 이상	견책 이하	견책 이하
과실	견책 이하	주의	주의

3. (생략)

4. (생략)

5. 가중 및 감경

가.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.

다. <삭 제, 2016.2.29.>

라. 단위부·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.

마.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(붙임 2)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국에스지증권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. 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· 기관주의
임직원 (3명)	· 주의 1명 ·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2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계열회사간 정보교류 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」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실명법”)」 제4조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

한국에스지증권㈜의 관련 내규인은「내부통제기준」에 따르면,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를 통한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 하여야 함에도

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그룹내 고객의 거래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인 ㉮ 시스템 및 ㉯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동사와 거래한 고객(최대 xx개)의 서면

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 직원 xx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법규 >
1. 舊「자본시장법」 제45조 제2항
2. 舊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(2021.5.18.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.5.20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51조 제3항
3.「자본시장법」 제45조 제2항
4.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0조 제1항
5.「금융실명법」 제4조 제1항

⑵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

「자본시장법」 제4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므로,

한국에스지증권㈜은 관련 내규인「내부통제기준」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를 통한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별도 내규로 위탁매매(Agency) 부문과 자기매매(Principal) 부문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,

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선물옵션 협의 대량매매(Block Trade) 주문을 위해 ㉮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탁매매부문과 자기매매 부문간 매매거래 주문 및 체결 내역에 대한 조회 권한을 분리하지 않았으며

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고객의 금융상품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㉯ 채팅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팅룸에 위탁매매 부문 직원과 자기매매 부문 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 법규 >
1.「자본시장법」 제45조 제1항
2.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0조 제1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은행과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1국
연 락 처	02-2100-2953	02-2100-2653	02-3145-7036